

발의안 제38호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장관 작성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 7,316달러가 넘는 연간 소득에 대해 최저 개인 소득자의 경우 0.4%에서부터 250만 달러가 넘는 개인소득자의 경우 2.2%까지 적용하는 차등제를 사용하여 개인 소득세율을 12년 간 인상합니다.
- 첫 4년 간, 세금 수입의 60%를 K-12 학교에, 30%를 주정부 부채 상환에, 10%를 유아 프로그램에 각각 배정합니다. 그 후에는, 세금 수입의 85%를 K-12 학교에, 그리고 15%를 유아 프로그램에 각각 배정합니다.
- 지역 통제, 감사,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K-12에 대한 자금을 학교별, 학생당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 주정부가 신규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주정부의 개인 소득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2013-14년에는 대략 100억 달러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2012-13년에는 이 금액의 절반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 처음 몇 년 동안의 각 연도에는 학교에 약 60억 달러, 보육 및 유아원에 대해 10억 달러, 그리고 주정부의 부채 상환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 30억 달러가 사용됩니다. 2013-14년의 배정 금액은 2012-13년에 징수한 자금의 추가 분배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 2017-18년에서 2024-25년까지는 학교, 보육 및 유아원에 지출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부채 상환에 지출되는 비율은 감소할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개요

이 법안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납세자의 개인소득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세입은 공립 학교,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 그리고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입니다. 각 법안의 주요 규정은 아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합니다.

주 세금 및 세입

38 배경

개인소득세(PIT). PIT는 개인 및 가족의 임금, 사업, 투자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 PIT 세율은 각 소득 계층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소득 부분에 대해 1퍼센트부터 9.3퍼센트 사이입니다. (이를 한계 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오를수록 더 높은 한계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에서 창출되는 조세 수입(2010-11 회계연도 동안 총 494억 달러)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1퍼센트의 세금이 적용됩니다(관련 세입은 전액 정신 건강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제안 사항

PIT 세율을 인상합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 동안 최저 소득 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 주정부 PIT 세율을 인상합니다.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소득 계층 세율이 인상되면서 추가 한계 세율도 인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신고자의 경우 \$34,692에서 \$54,754 사이 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0.7퍼센트의 한계 세율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총 세율이 4.7퍼센트로 인상됩니다. 마찬가지로 \$54,754에서 \$76,008 사이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1퍼센트의 한계 세율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총 세율이 7.1퍼센트로 인상됩니다. 이같은 세율 인상으로 인해 주정부 PIT 신고 중 약 60%에 대해 납세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 요인들 중 개인, 부양 가족, 노인 및 기타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본 법안의 세율 인상 대상 계층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많은 저소득 세금 신고자들의 경우 계속해서 모든 납세 의무가 면제될 것입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한 추가 1퍼센트는 계속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세율 변화로 인해 해당 납세자들의 한계 PIT 세율은

발의안 제38호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그림 1

현행 세율과 발의안 제38호에 따라 제안된 개인 소득세의 세율

개인 신고자의 과세 대상 소득 ^a	공동 신고자의 과세 대상 소득 ^a	세대주 신고자의 과세 대상 소득 ^a	현행 한계 세율 ^b	제안된 추가 한계 세율 ^b
\$0-\$7,316	\$0-\$14,632	\$0-\$14,642	1.0%	—
7,316-17,346	14,632-34,692	14,642-34,692	2.0	0.4%
17,346-27,377	34,692-54,754	34,692-44,721	4.0	0.7
27,377-38,004	54,754-76,008	44,721-55,348	6.0	1.1
38,004-48,029	76,008-96,058	55,348-65,376	8.0	1.4
48,029-100,000	96,058-200,000	65,376-136,118	9.3	1.6
100,000-250,000	200,000-500,000	136,118-340,294	9.3	1.8
250,000-500,000	500,000-1,000,000	340,294-680,589	9.3	1.9
500,000-1,000,000	1,000,000-2,000,000	680,589-1,361,178	9.3	2.0
1,000,000-2,500,000	2,000,000-5,000,000	1,361,178-3,402,944	9.3	2.1
2,500,000 초과	5,000,000 초과	3,402,944 초과	9.3	2.2

^a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 계층 구분은 2011년도에 유효한 것으로,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개인 신고자에는 각자 따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결혼한 부부 및 RDP(등록된 동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공동 신고자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부부 및 RDP, 그리고 부양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 유자격자도 포함됩니다.

^b 한계 세율은 열거된 각 소득 계층 구분별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15,000인 개인 신고자의 경우 현행 세율에 따르면 2011년 납부 세금이 \$227였을 것입니다: \$73(신고자의 소득 중 첫 \$7,316 부분의 1퍼센트에 해당)와 \$154(신고자의 소득 중 \$7,316을 초과하는 부분의 2퍼센트에 해당)의 합입니다. 이같은 납부액이 여러 요인 중 개인, 부양자, 노인 및 기타 감세 혜택에 따라 감소 또는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안된 추가 세율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유효합니다. 열거된 현행 세율에는 100만 달러 초과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1퍼센트의 정신 건강 세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0.3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번 투표 대상인 발의안 제30호도 PIT를 인상하게 됩니다. 다음 상자에 보면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유아 보육 및 교육(ECE) 및 채무 상환 자금을 제공합니다. 본 법안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은 새로 만들어지는 캘리포니아 교육신탁기금(CETF)에 적립됩니다. 이 기금은 세 가지 용도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림 2에서 나와 있는 대로 2013-14년과 2014-15년에 본 법안은 CETF 기금의 60퍼센트를 학교에 배정하고, 10퍼센트를 ECE 프로그램, 그리고 30퍼센트를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합니다. 2015-16년과

그림 2

발의안 제38호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의 할당

	2013-14년 및 2014-15년	2015-16년 및 2016-17년	2017-18년부터 2023-24년까지
학교	60%	60%	85%
유아 보육 및 교육(ECE)	10	10	15
주정부 부채 상환	30	30 ^a	— ^a
총계	100%	100%	100%
각급 학교 및 ECE 프로그램에 대한 할당액 증액 한도 ^a	없음	있음	있음

^a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최소 비율을 반영합니다. 증액 한도를 초과하는 세입은 부채 상환에 사용됩니다.

38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2016-17년에는 전체적인 기금 배정은 동일하지만 주정부 부채 상환에 조금 더 높은 비율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5-16년부터 이 법안이: (1) 이전 5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 1인당 개인 소득의 평균 증가액을 바탕으로 학교 및 ECE 프로그램에 대한 총 배정액 증가를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30호와 발의안 제38호에 모두 찬성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 헌법에 보면 두 개 법안이 상충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동일한 주 전체의 투표를 통해 통과된 두 개 법안의 조항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더 많은 "찬성" 표를 획득한 법안의 조항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체의 투표 대상인 발의안 제30호와 발의안 제38호는 모두 개인 소득세(PIT)를 인상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따라서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에는 한 가지 세금 인상만 발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제30호와 발의안 제38호에는 모두 양쪽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어떤 조항들이 발효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의안 제30호가 찬성표를 더 많이 받는 경우.**
발의안 제30호에는 발의안 제30호의 조항 전체가 우선하며, PIT 세율 인상과 관련한 일체 다른 법안(이 경우 발의안 제38호)의 조항들은 일체 발효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항이 있습니다.
- **발의안 제38호가 찬성표를 더 많이 받는 경우.**
발의안 제38호에는 발의안 제38호의 조항 전체가 우선하며, 판매세 또는 PIT 세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다른 법안(이 경우 발의안 제30호)의 세율 관련 조항들은 일체 발효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항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발의안 제30호의 세금 인상이 발효되지 않게 되면서, "자동 예산 삭감(trigger cuts)"이라고 불리는 지출 삭감이 발효될 것입니다. (자동 예산 삭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 제30호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제한하며, (2) 증가율 초과분 기금은 전액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017-18년부터 2023-24년까지는 CETF 기금의 최대 85퍼센트가 학교로 배정되며, 15퍼센트까지 ECE 프로그램으로 배정되고, 증가율 초과분 세입은 계속해서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입법부에 개정 권한이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통과시킬 경우 이 법안은 앞으로 찬반 투표를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입법부는 유권자 승인 없이는 이 법안에 대해 일체 개정이 금지됩니다.

재정적 영향

연간 추가 주정부 세입 약 100억 달러. 처음 몇 년 간(2013-14년 시작) 연간 주정부 세입 증가액은 약 10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2012-13년에 이 법안으로 인한 연간 주정부 세입 증가액은 이 금액의 절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창출되는 총 세입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해에 창출된 세입은 이전 해 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이 법안이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상위 소득 납세자들의 소득은 주식 시장, 주택 가격 및 기타 투자 상 변동에 의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납세자 소득의 이같은 변동과 세율 인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 불확실하므로, 이 법안을 통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배경

대부분의 공립 학교 예산 지원은 주정부 예산 지원 공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약 600만 명의 공립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학생들은 1,000여 개의 교육 기관, 주로 학군을 통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예산은 발의안 제98호 최저 보장액이라고 칭하는 주정부 학교 기금 지원 공식을 통해 제공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지원에도 최저 보장액 충족 조건이 적용됩니다.) 최저 보장액은 주정부 일반 기금과 지방 재산세 세입을 합쳐서 조달합니다. 2010-11년에 학교는 학교 예산 지원 공식을 통해 43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지출은 지방 집행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주정부 관련 학교 기금의 약 70퍼센트가 다양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각 학군의 집행 위원회가 기금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집행 위원회는 보통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기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기금이 해당 학군 내 각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금의 나머지 30퍼센트는 반드시 급식 제공 또는 학생 통학 등과 같은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학군은 보통 이처럼 용도가 제한된 기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제안 사항

이 법안에 따라 각급 학교는 2016-17년 기간 중에는 PIT 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세입의 약 60퍼센트를, 그 이후에는 연간 약 85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이 CETF 기금은 발의안 제98호의 학교 일반 기금 지원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기금은 세 가지 보조금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또 한이 법안을 통해 이 기금과 관련해 지출 제한과 보고 요건이 수립됩니다. 이러한 주요 조항은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기금을 세 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배분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CETF 학교 기금을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기금의 70퍼센트).** 기금의 가장 큰 부분(전체 CETF 학교 기금의 70퍼센트)을 각 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학생당 보조금은 각 학생의 성적에 따라 결정되며 더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있는 학교가 더 많은 기금을 받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은 수업, 학교 지원 스태프(카운셀러, 사서 등), 학부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학생 보조금(기금의 18퍼센트).** 법안은 CETF 학교 기금의 18퍼센트는 각 학교당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무료 급식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수에 따라 정의)의 수를 기준으로 전 주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배정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학생 보조금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술 및 수업 자료 보조금(기금의 12퍼센트).** 기금의 나머지 12퍼센트는 각 학교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전 주에 일률적인 비율로 배정합니다. 이 기금은 학교 교직원 교육 목적과 최신 기술

및 수업 자료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금은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학군이 받은 기금은 반드시 기금 배정 대상 학생이 있는 해당 학교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학생 보조금의 경우 특정 학군 내 저소득 학생이 100퍼센트 모두 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저소득 보조금 전액을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학교 기금과 마찬가지로 CETF 기금이 각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지방 집행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발의안 제38호 기금이 모든 학교의 기금 순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 법안은 각 학군이 비 CETF 재원으로부터 받는 학생별 기금액이 2012-13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대해서든 학군이 학생당 지원금을 2012-13년 수준 아래로 감축하는 경우, 해당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해당 감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각 학군은 지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발의안 제38호는 학군 집행 위원회가 공개 공청회를 열고 CETF 학교 기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 직원 및 기타 학교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위원회는 기금 사용처를 결정하고 나면 반드시 CETF 학교 지출이 어떻게 교육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며 어떻게 그러한 향상된 결과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각 학교별로 예산 보고 요건을 수립합니다. 또한 법안에는 학군에 대한 여러 보고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2-13년부터 모든 학군이 각 소속 학교에 대해 온라인 예산을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예산에는 각 기금 출처에서 나온 각 학교별 지원금 및 지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금액은 다양한 지출 범주로 나뉘 기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익 교육장은 반드시 통일된 예산 보고 양식을 제공하고 이전 연도 데이터를 포함해 모든 학교의 예산이 일반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군은 반드시 해당 학년도 만료일로부터 60일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이내에 각 소속 학교에서 CETF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허용 및 금지 사항. 법안은 학군 배정금의 최대 1퍼센트를 예산 책정, 보고 및 감사 요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본 법안에서는 해당 인상분을 비 CETF 기금 지원 대상 직원 등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CETF 학교 기금을 급여 또는 수당 인상 제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법안에는 CETF 학교 기금이 2012년 11월 1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 지방 또는 연방 기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

학교에 추가 기금을 제공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 학교는 법안을 통해 연간 약 60억 달러 또는 학생당 1,000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금액 중 42억 달러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용도로 제공되며 11억 달러는 저소득 학생 보조금, 7억 달러는 교육, 기술 및 수업 자료 보조금 용도로 제공됩니다. (2013-14년 금액은 2012-13년에 확보된 기금도 배포 대상에 포함되므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향후 제공되는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17-18년부터 주정부 부채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학교에 지출되는 금액은 한층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유아 보육 및 교육

배경

ECE 프로그램은 5세 이하 유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보통 5세부터 시작)에 다니기 전에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아동은 어떤 종류든 ECE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가정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사회적, 인지적 능력 개발을 위해서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보통 출생부터 3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3세부터 5세 사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프리스쿨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며 보통 유치원 입학 준비에 중점을

둡니다. 주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프로그램이 반드시 기본적인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직원 자격, 성인-아동 비율, 커리큘럼, 가족 수수료, 보육 비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별 구체적 특징은 각기 다릅니다.

일부 아동은 보조금 지원 대상 ECE 서비스 참여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ECE 프로그램에 유료로 참여하지만, 일부 아동의 경우 공공 기금의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보통 저소득 가구, 생활 보조-취업 프로그램 또는 그 외 다른 취업 또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및/또는 특수 니즈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구 등에 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ECE 보조금 수혜 자격은 주 중앙 소득 수준의 70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예를 들어, 현재 3인 가구의 월 한도는 \$3,518입니다)로 한정됩니다. 주정부는 보조금 수혜 대상 ECE "슬롯"에 대해 아동 당 정해진 비율 액수를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 전일제 영유아 보육에 월 1,000달러, 전일제 프리스쿨에 월 700달러가 지급됩니다.

현재 기금 수준으로는 모든 자격 충족 아동에 대해 ECE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2010-11년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약 26억 달러로, 이 돈을 사용해 5세 이하의 캘리포니아주 아동 중 약 15퍼센트에 해당되는 약 500,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캘리포니아 아동 중 대략 절반이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 수혜 자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및 연방 ECE 기금이 자격을 충족하는 아동 전체에 보조금 지급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제안 사항

앞서 언급한 것처럼 ECE 프로그램은 2016-17년 기간 중에는 PIT 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세입의 약 10퍼센트를, 그 이후에는 연간 약 15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법안은 이 돈을 그림 3에 요약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배분하여 할당합니다. 그림 상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ECE 프로그램을 위해 확보된 기금 중 최대 23

발의안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제38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퍼센트는 최근 주 예산 감소분을 아동 보육 슬롯 및 제공자 지급율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주정부의 ECE 제도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정 주 전체 활동을 시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ECE 기금은 그림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더 많은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특정 ECE 제공자들에 대한 지급율을 인상하기 위해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됩니다. 또한 법안은 주정부가 ECE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지원을 감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정부는 앞으로도 ECE 프로그램에 주 일반 기금에서 2012-13년에 지출한 것과 동일한 비중(약 1퍼센트)을 지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안에는: (1) ECE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등급 시스템, (2) 프리스쿨, 그리고 (3)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3
발의안 제38호의 유아 보육 및 교육(ECE) 조항

목적/설명	ECE 기금의 비율 ^a
“복원 및 제도 개선”	
프로그램 복원 — 2008-09년도 이래 기존의 보조금 지원 대상 ECE 프로그램에 대해 이루어진 주정부 예산 삭감 부분을 부분적으로 복원합니다. 복원에는 서비스 제공 대상 아동 수를 확대하고, 혜택 수혜 자격으로 정해진 가족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주 정부의 아동 1인당 지급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19.4%
등급 평가 시스템 —각 ECE 프로그램에 대해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 및 학업적 준비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공식적인 등급을 책정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2.6
ECE 데이터베이스 —주정부 지원 대상 ECE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위해 주 전체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아동의 ECE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와 유치원 진학 준비도 평가 성적이 포함됩니다. 주정부의 K-12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됩니다.	0.6
라이선싱 조사 —주정부 라이선스 발행 기관이 ECE 프로그램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 및 안전 조사의 빈도를 늘립니다.	0.3
소계	(23.0%)
“ECE 프로그램의 강화 및 확대”	
삼세부터 오세 사이의 아동 대상 서비스 —더 많은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서비스 이용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51.6%
출생부터 삼세까지의 아동 대상 서비스 —저소득층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및 가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이 캘리포니아 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16.6
제공자 지급율 —새로운 등급 책정 스케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ECE 프로그램에 대해 아동 1인당 지급금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지원금의 대부분은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집중시킵니다. 또한 출생부터 18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받은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ECE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기존 아동 1인당 지급율을 인상합니다.	8.9
소계	(77.0% ^b)
총계	100.0%

^a 복원과 제도 개선에 할당된 금액이 3억 5,500만 달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안의 부채 상환이 2017-18년에 중단되면 이러한 활동에 지출되는 비율은 약간 줄어들고, ECE 프로그램 강화 및 확대에 지출되는 비율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b 이 기금의 최대 3퍼센트를 주정부 차원 행정관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ECE 제공 기관에 할당되는 기금의 최대 15퍼센트를 시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8

개별 ECE 프로그램의 품질 평가를 위해 주 전체 등급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법안은 주정부가 개별 ECE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가늠하기 위해 "조기 학습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QRIS)"을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치에 더해 주정부는 2014년 1월까지 각 프로그램별로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과 학업 준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스케일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ECE 프로그램은 이 스케일을 사용하여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등급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발의안 제 38호는 QRIS 스케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아동 당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 많은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저소득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슬롯 수를 확대합니다. 신규 슬롯 제공에 필요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품질 등급이 높은 프리스쿨 프로그램 제공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기금은 현재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지 않은 자격 충족 아동 수 추정치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할당됩니다. (신규 슬롯의 최소 65퍼센트는 전일제, 전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기존 가구 소득 참여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또는 가족 소득과 관련 없이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제한되며

최우선 순위는 위협에 직면한 아동에게 부여됩니다(위탁 양육 아동 포함).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 대상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동일한 이름의 연방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캘리포니아주 얼리 헤드 스타트(EHS)를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중 최대 65퍼센트는 출생부터 삼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아동 보육 및 가족 지원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신규 슬롯의 최소 75퍼센트는 전일제, 전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EHS 기금의 최소 35퍼센트는 프로그램 중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및 보육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족 지원 서비스에는 프로그램 직원의 가정 방문, 아동 발달 정도 평가, 가족 문맹 퇴치율 개선 프로그램, 부모 및 보육자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재정적 영향

ECE 프로그램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법안을 통해 마련되는 기금 중 연간 약 10억 달러를 주정부 ECE 시스템에 사용하게 됩니다. (2013-14년도 금액은 2012-13년도에 확보된 자금도 할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시행 초기 몇 년 동안 추가로 약 10,000명의 영유아 및 90,000명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앞으로의 가용 기금 액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날 것입니다. 2017-18년부터 주정부 부채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ECE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금액은 한층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주정부 부채 상황

배경

일반 공채 채무 상황. 채권 자금 조달은 주로 장기간 사용되는 인프라(학교 및 대학 건물, 고속도로, 인도 및 차도, 토지 및 야생 생물 보호, 수자원 관련 시설 포함)에 사용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정부가 사용하는 장기 차용 방식입니다. 주정부는 투자자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 대가로, 주정부는 명시된 일정에 따라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정부 채권의 대부분은 일반 공채로, 이는 유권자들이 승인해야 하며 주정부의 일반 조세 부과 권한을 통해 보장됩니다. 일반 채권은 보통 일반 기금에 있는 자금에서 연차 채무 상환 지급을 통해 상환됩니다. 2010-11년도에 주정부는 일반 공채 채무 상환금으로 47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 중 32억 달러는 학교 및 대학 시설에 대한 채무 상환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안 사항

2016-17년까지 채무 상환 용도로 세입의 최소 30퍼센트. 2016-17년도 말까지 발의안 제38호에 따른 세입의 최소 30퍼센트는 주정부의 채무 상환 비용 지급 용도로 사용됩니다. 법안은 이 돈을 먼저 교육 채무 상환 비용 지급 용도(유치원 시설부터 대학 시설)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교육 채무 상환 비용을 지급한 후 기금이 남는 경우 주정부의 다른 일반 공채 채무 상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16년부터 학교 및 ECE 할당금 증가를 제한하고 남는 기금은 채무 상환 지급에 사용합니다. 2015-16년부터 학교 및 ECE 프로그램에 대한 총 CETF 할당 금액은 이전 오년 간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개인 소득 평균 증가 속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을 초과해 수령된 CETF 기금은 주정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안은 세입 할당 상의 변동 사항을 감안해 2017-18년은 제외합니다.)

재정적 영향

2016-17년 사이 연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일반 기금 절감. 2016-17년 연말까지 법안을 통해 확보된 세입의 최소 30퍼센트(연간 약 30억 달러)는 일반 공채 채무 상환 비용을 지불하고 주정부의 일반 기금 절감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는 다른 공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 기금 세입을 늘림으로써 이 기간 동안 균형 예산 달성을 더 용이하게 만듭니다.

2015-16년부터 추가 일반 기금 절감 가능. 법안의 증액 제한 조항으로 인해 특정 연도에는 일반 기금 절감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감액은 PIT 세입 및 1인당 개인 소득 증가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